

창원지방법원 2018. 12. 7 선고 2018나484 판결 [계약보증금 반환청구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18. 12. 7 선고 2018나484 판결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1. 16 선고 2016가단719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8. 11. 16.

판결 선고 2018. 12. 7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1. 16. 선고 2016가단719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

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평균

판사황일준

판사박성규